

공 고

「지방회계법」 제14조제3항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삼척시 세입·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성명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6월 2일

삼척시의회 **의장**



1. 검사기간 : 2017년 4월 27일 ~ 5월 16일(20일간)
2. 검사위원 성명
 - 대표검사위원 : 이 광 우(삼척시의회 의원)
 - 검 사 위 원 : 김 동 윤(전직 공무원)
 - 검 사 위 원 : 정 연 만(전직 공무원)

첨부 : 결산검사의견서